

*이 상품은 보험상품이며 은행의 예·적금과 다릅니다.

KB 금융그룹 | 국민은행
금융파트너

연금

무배당 KB국민의연금보험



- *이 상품은 보험상품이며 은행의 예·적금과 다릅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모집종사자는 본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

콜센터 : 1588-99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www.kbstar.com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제2003091003호

KB라이프

고객센터 : 1588-337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KB라이프타워(06253)
www.kblife.co.kr

준법감시인확인필-SM-2212237-1(2022.12.26) 고객마케팅부 2022년 12월 제작



판매사

KB 국민은행

보험사

KB 라이프

상품 특징

무배당 KB국민의연금보험



사업비는 낮추고! 연금액은 높이고! 3년 시점 납입원금 보증

-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3년시점에 납입원금을 보증해 드립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확정이율 연복리 1.0% 적용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공시이율(2022년 12월 현재) 2.90%, 적용(계약 후 경과기간 5년미만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 최저보증)



실질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연금개시시 연금개시보너스를 드립니다

- 연금개시전 확정이율(연복리 1.0%)로 계산한 계약자적립액과 연금공시이율로 계산한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연금개시를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연금개시보너스 = 공시이율 연금적립액 - 확정이율 연금적립액
- ※ 연금개시시점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금개시보너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연금개시시점에 공시이율로 적립된 계약자적립액이 확정이율로 적립된 계약자적립액보다 작을 때에는 연금개시보너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이후 바로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완료 후 별도의 거처기간 없이 바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더 커지는 세제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

※ 위 사항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 구분 | 적립형 | |
|----------|--|---------------------------|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개인형(20년보증 또는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 / 정액형, 체증형(5%) | |
| 연금개시나이 | 45 ~ 95세 | |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장개시일부터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 보험료 납입주기 | 월 납 | |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 개인형으로 정해지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완료 후 연금개시 가능합니다.

※ 기대여명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가입시점 통계표에 따른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기간 |
|----------|------------------------|
| 0세 ~ 85세 |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기간별 최소보험료(1구좌당) | | | | 최대보험료(1구좌당) |
|-----------|-----------------------|------|------|--------|-------------|
| | 3년납 | 5년납 | 7년납 | 10년납이상 | |
| 0세 ~ 50세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51세 ~ 60세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 61세 ~ 65세 | 3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 66세 ~ 85세 | 20만원 | 3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1) 보험의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단, 연금개시전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확정이율(1.0%)로 합니다.
- (2)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1)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은 6개월 이내(단, 3년납 이하는 11개월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이 계약의 확정이율(1.0%)로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납입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3) 연금개시보너스 금액 산출 시 사용하는 공시이율로 적립된 계약자적립액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가입안내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해당월의 기본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 납입시 공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납입후 계약관리비용)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월에 해당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유지보너스 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 5년, 7년,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이 연금개시사이의 연계약해당일과 동일한 경우, 유지보너스를 연금개시 계약자적립액에 포함합니다.

- 유지보너스 금액 = 유지보너스 기준금액 X 유지보너스율
- 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

| 유지보너스 발생일 | 유지보너스율 | |
|-----------------------|--------|-------|
| | 3년납 | 3년납 외 |
| 계약일부터 3년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1.0% | 1.6% |
| 계약일부터 5년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1.0% | 1.0% |
| 계약일부터 7년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1.0% | 1.0% |
| 계약일부터 10년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2.0% | 2.0% |

- ※ 기본보험료의 선납이 있는 경우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상기의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유지보너스를 적용합니다.

연금개시보너스에 관한 사항

연금개시시점에 연금개시를 신청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보너스 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합니다.

연금개시보너스 금액 = 공시이율 연금적립액 - 확정이율 연금적립액

- ※ 연금개시시점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금개시보너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연금개시시점에 공시이율로 적립된 계약자적립액이 확정이율로 적립된 계약자적립액보다 작을 때에는 연금개시보너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계약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횟수에 관계없이 총 36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 ※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 개시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보험료 납입기간도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청 당시 해당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6개월 분의 기본보험료 미만일 경우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보장내용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고도재해 장애급여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매월 30만원 (60회 지급) |

- 고도재해장애급여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부터 5년을 고도재해장애급여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은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종신 연금형 | 개인형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20년보증 또는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정액형 - 체증형(5%) |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종신 연금형 | 개인형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20년보증 또는 100세보증 또는 기대여명보증) |
| | 부부형 | 주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부부형 | 중 피보험자 |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중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20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 자 |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당해년도 주피보험자 연금액의 50% 지급 |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란 "보험료 및 해당환급금 산출방범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연금계약순보험료(연원보험료에서 보장계약순보험료, 계약결렬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확정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지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 유지보너스 및 연금개시보너스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의 매월 해당되는 "보장계약순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으로 합니다.
- 연금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개인형은 피보험자, 부부형은 주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증지급기간 중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 개인형(100세 보증)은 "100세-연금개시사이" 환수만큼 연금연액이 보증지급됩니다.
- 체증형(5%)은 10차년도까지 직전년도 연금액에 5%로 체증하여 지급한 후 1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년도의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당환급금 산출방범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해당환급금 산출방범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생존연금에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 예시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기준: 남자 40세, 적립형, 5년납, 60세 연금개시, 월기본보험료 50만원, 단위 : 만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누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600 | 570 | 95.15% |
| 3년 | 1,800 | 1,801 | 100.07% |
| 5년 | 3,000 | 3,057 | 101.91% |
| 7년 | 3,000 | 3,148 | 104.95% |
| 10년 | 3,000 | 3,303 | 110.13% |
| 20년 | 3,000 | 3,648 | 121.60% |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 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예시금액은 연금개시전 계약자직립액 산출시 적용되는 확정율은 연복리 1.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에 적용되는 이율은 확정율이 연복리 1.0%이며,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확정 적용됩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연계약해당일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유지보너스 해당금액(계약해당일 기준)을 포함한 금액이며, 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사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연금지급액 예시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기준: 남자 40세, 적립형, 5년납, 60세 연금개시, 월기본보험료 50만원, 단위 : 만원

| 구분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2.90%) 가정시 | | |
|----------------------------|--------|--------|--------------------|-----|-----|
| 확정이율(1.0%) 연금계약 계약자직립액(A) | | 3,648 | | | |
| 연금개시보너스(B) | | - | 1,396 | |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직립액(A)+(B) | | 3,648 | 5,044 | | |
| 중 산 연 금 | 개인형 | 100세보증 | 정액형 | 96 | 203 |
| | | | 5%체증형 | 65 | 140 |
| | | 20년보증 | 정액형 | 111 | 224 |
| | | | 5%체증형 | 76 | 156 |
| | 기대여명보증 | 정액형 | 110 | 222 | |
| | | 5%체증형 | 75 | 155 | |
| | 부부형 | 20년보증 | 정액형 | 101 | 211 |
| | | | 5%체증형 | 68 | 147 |

- 계약 체결 시 연금지급형태는 중산연금형 개인형으로 정해지고,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중산연금형 개인형 또는 중산연금형 부부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시점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직립액 적용되는 이율은 확정이율(연복리 1.0%)로 확정 적용합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직립액이란 연금계약소보험료(영양보험료에서 보장계약소보험료,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확정이율(연복리 1.0%)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 유지보너스와 연금개시보너스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연금개시시점에 연금개시를 신청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금개시보너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시점에 공시이율로 적립된 계약자직립액이 확정이율로 적립된 계약자직립액보다 작을 때에는 연금개시보너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2022년 12월 현재 공시이율 기준(연복리 2.90%)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실제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매년 지급되는 연금도 변경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 3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종료 경과기간 5년미만은 연복리 1.0%, 경과기간 5년이상 10년미만은 연복리 0.75%, 경과기간 10년이상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전기준입니다.

6 / 8 본 상품안내장은 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리(납정)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서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전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2.3%입니다. 단, 연금개시전 연금계약 계약자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1.0%로 확정 적용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우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여,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예금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상당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KB라이프생명 보험상당 안내 : 1588-3374,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02-2262-6562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시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라이프생명 보험상품 및 가격 공시실 : www.kblife.co.kr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체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방카슈랑스 부주의 신고센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 등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